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2개 연도 이상 도로점용하는 경우의 연간점용료 증가율을 제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제30조제4항
- 2년 이상 도로점용시 연간점용료 증가율 개정(안 제3조)
 - 현행 :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함
 - 개정 :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함
-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출입시설의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4조)
 - 「도로법」 제68조제4호의2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5조제1항 제3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1조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법 제117조 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7]”을 “별표 7의”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조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자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자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			건축물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41,40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금자동입출금기 · 상품진열대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50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 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에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④ ----- ----- ----- ----- ----- ----- ----- -----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
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
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
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점용
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⑦ (생략)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
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
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
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
법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

③ 「도로법」(이하 “법”이라

제4항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5조 제1항 제3호-----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 별표-----
-----.

② -----

- 100분의 10 이상 -----
----- 전년도에 납부한 연
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
가된 -----

-----.

③ -----

한다) 제61조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② (생략)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 제61조제3항-----

-----.

-----.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 법 제117조제2항-----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과태료 부과는 5일 이내의 기간 내에 자진정비 할 것을 1 차 계고한 후 기간 내 정비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u>별표 7의</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 7. 생략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 ② 생략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 3. 생략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실·과		도 로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상 곤
	담 당	이 수 정
	담 당 자	이 재 현 (480-5455)